
및 검직허가

등 규정 준수실태 특정감사 결과 보고

2014. 3.

기 획 조 정 관 실

및 검직허가 신고 등 준수실태 특정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 보고

외부강의 및 검직허가 신고 등 규정 준수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.

I. 특정감사 개요

- 기 간 : 2014. 2. 17.(월) ~ 2. 28.(금) / 10일간
- 감 사 자 : 법무감사담당관실 등 4명
- 대상기관 : 문화재청 전체
- 감사대상 : 2013년 외부강의 및 검직허가 신고현황
- 감사중점사항
 - 외부강의 등 신고 준수 여부(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)
 - 검직허가 여부(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)
- 감사방법
 - 전체 직원의 외부강의 등 현황 파악이 곤란하여 우리 청 의존도가 높은 업무를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파악
 - 문화재수리 자격시험 관련 기관 : 한국산업인력공단
 - 발굴 관련 기관 : 42개 발굴기관
 - 시도문화재위원회 : 17개 시·도
 - 외부강의 신고 시스템에 기 신고 된 현황과 비교 분석

II. 특정감사 결과

□ 감사 지적 사항 총괄 : 총 5건

- 행정상 조치 : 개선 1건, 통보 2건
- 재정상 조치 : 시정 2건(환수 등 금액 991,380원)

III. 특정감사 결과 요약

1. 외부강의 등 신고 미흡 및 누락

가. 외부강의 등 신고 누락

-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에는 청장에게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,
 - 총 377건 중 261건(69.2%)은 신고하고, 나머지 116건(30.8%)은 직원들의 관련 규정 미숙지 등으로 미신고함.

※ 유형별 : 자문·의결 68건, 시험·평가 32건, 강의·강연 11건, 발표·토론 5건

*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 제1항

나. 외부강의 대가 등 신고 오류

- 외부강의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요청자, 요청사유, 장소, 일시 및 대가(강의료, 출장비, 원고료, 기타)를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,
 - 외부강의를 요청한 기관에서 지급한 대가와 외부강의를 실시한 직원이 시스템에 신고한 대가 중 6건(4명)이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많거나 적음.

*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 제1항

⇒ 외부강의 대가 등 신고 누락 및 오류사항은 조속히 신고 및 정정신고토록 해당 부서(소속기관 포함)에 통보

2. 외부강의 등 대가 중복 및 과다 수수

가. 출장비 중복 지급

- 강의 요청기관에서 여비와 관련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에서 출장여비를 중복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
 - 3명(3건)은 외부 요청기관으로부터 교통비를 받고도 중복하여 소속기관의 출장비 231,380원을 받음.(붙임 1)

* 국가공무원 복무·징계 관련 예규 제11장(안전행정부)

나. 외부강의 등 대가 과다 수수

-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강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별표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
 - 5명(13건)이 최소 3만원에서 최고 18만원까지 초과하여 받음.(붙임 2)

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 제2항 / 별표				
직무 관련 외부강의·회의 등 대가 지급기준 금액				
(단위 : 천원/ 1시간)				
구 분	장·차관급	과장급 이상	5급 이하	비고
1시간까지 상한액	400(장관) · 300(차관)	230	120	원고료·여비는 미포함
1시간 초과 시 시간당 금액	300 · 200	120	100	

⇒ 소속기관 출장비 중복 수령한 금액은 환수하고, 대가 기준을 초과하여 받은 외부강의 대가는 수령자가 지급한 외부기관으로 직접 반납 조치 하며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준수토록 지도·감독 철저 통보

3. 외부강의 등 복무관리 미흡

가. 외부강의 등에 대한 근무상황(출장, 연가) 처리 미흡

- 담당직무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해당기관의 기능 수행 및 해당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'출장'으로 처리하고 그 이외에는 '연가'로 처리하여야 하나,
- 동일 또는 유사 성격의 외부강의 등에 대하여 결재권자 및 외부강의 실시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명확한 구분 없이 '연가'와 '출장'의 근무상황을 임의대로 처리하는 등 복무관리가 미흡함.

외부강의 등 유형에 따른 근무상황 처리현황

구분		외부강의 등 유형					
		총계	강의·강연	발표·토론	시험·평가	자문·의결	기타
근 무 상 황	총계	377	109	49	61	153	5
	연가	93	31	9	9	43	1
	출장	135	15	30	21	69	-
	외출	2	-	-	-	2	-
	시간외	119	63	9	20	23	4
	기타	28	-	1	11	16	-

* 국가공무원 복무·징계 관련 예규 제11장(안전행정부)

나. 전화, 메일 등을 통한 외부강의 요청의 승인 부적정

- 외부강의 등은 반드시 요청기관의 공문에 의하여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총 377회 중 274회(72.7%)만 문서로 요청이 있었고, 103회(27.3%)는 전화, 메일, 초청장 등으로 요청하였음에도 승인함.

* 국가공무원 복무·징계 관련 예규 제11장(안전행정부)

⇒ 외부강의 등에 대한 복무처리(출장, 연가) 철저 및 외부강의 요청 형식을 반드시 문서로 하도록 하는 등 세부기준 마련

4. 겸직 미허가

-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나, 대가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 등을 할 때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(겸직허가)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
 - 우리 청 직원 중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44건(30명) 중 6건(5명)만 겸직허가를 받았고, 38건(25명)은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활동함.

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(겸직 허가)

-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.

국가공무원 복무·징계 관련 예규 제11장 (안전행정부 예규)

- 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 횟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는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

⇒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는 조속히 허가를 받고, 추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·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통보

5. 기타사항

□ 외부강의 등 실시시간 및 횟수 과다

-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 등은 가급적 1일 4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, 월 2회(연간 12회)를 초과(겸직허가는 제외)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
 - 1일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총 135회 중 23회이며,
 - 월 2회(연간 12회)를 초과하는 경우는 연간 총 121명 중 6명으로 15 ~ 35회까지 외부강의 등을 실시하는 등 외부강의 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.
- * 국가공무원 복무·징계 관련 예규 제11장(안전행정부)
- *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 별표 2 (2013.8.27 개정, 훈령 제279호)

⇒ 외부강의 등의 횟수 등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 필요

IV. 조치계획

1. 행정상 조치(개선 1건, 통보 2건)

- 외부강의 등 신고 세부기준 마련 및 지도·감독 철저
 - 외부강의·회의 등 세부 지침 마련 (법무감사담당관실)
 - 누락·오류 신고 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정정 및 신고토록 하고, 앞으로는 외부강의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지도·감독하도록 통보(전 부서/소속기관)
- 겸직허가 관련 업무 지도·감독 철저
 - 겸직 허가 받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허가를 받도록 하고, 앞으로는 겸직허가 관련 업무를 철저히 지도·감독하도록 통보(운영지원과, 한국전통문화대학교, 국립문화재연구소)

2. 재정상 조치(시정 2건)

- 출장비를 중복 수령한 3건, 231,380원은 환수 조치(근대문화재과, 국립문화재연구소)
- 외부강의 등 대가 기준을 초과하여 받은 13건, 760,000원은 자체적으로 지급기관에 반납 조치(국립문화재연구소,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)

3. 기타

- 외부강의 등 신고 및 겸직허가 관련 규정 미준수자 대상 집합 교육 실시('14. 3월중 국립문화재연구소)